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7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9. 27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(비 참전유공자)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(비 참전유공자) 보훈명예수당을 월 12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함. (안 제8조)
-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[별지 제5호서식] 추가 (안 제10조)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 ※ 비용추계서 첨부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8. 9. ~ 2023. 8. 29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[붙임 1]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(복지 지원 등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4호”를 “제3호”로 한다.

제8조제1호나목 중 “7만원”을 “12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월 5만원”을 “월 5만원(다만,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,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보훈명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의”를 “수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2호서식”을 “제2호서식(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별지 제5호서식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앞면 제목 중 “제7조제4항”을 “제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장 이 경 숙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복지기획팀장 조 명 희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안 소 영 (행정 3755)

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(제7조제2항 관련)

(앞면)

|----- 8.6cm -----|

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

발급번호 :

사진
2.5cm × 3.0cm

성 명 :

주 소 :

생년월일 :

대상(보훈번호) :

유공자와의 관계 :

차량번호 :

유효기간 :

발 행 일 :

안 산 시

5.4
cm

(뒷면)

이 용 안 내

1. 이 우대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안산시 관내 시설의 **사용료 등 감면의 용도로만** 사용 가능합니다.
2. 주차장 이용시 차량번호와 본인이 일치하여야 합니다.(사업용차량 제외)
3. 이 우대카드를 분실·훼손·습득 시 안산시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이용시설 :
5. **문의처** : 안산시 복지정책과(☎ 481-2861)

[붙임 2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복지 지원 등)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증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(이하 ‘가족우대카드’ 라 한다)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 우대카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수당 등 지급)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(이하 “참전유공자” 라 한다)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1. 보훈명예수당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: 월 <u>7만원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7조(복지 지원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제4호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제3호 ----- -----.</p> <p>제8조(수당 등 지급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: 월 <u>12만원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3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: 월 5만원

제9조(수당 등 지급대상)① 보훈명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지급신청) ① 수당 등을 지급받 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3. -----
-- 월 5만원(다만,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, 재혼 등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

제9조(수당 등 지급대상)① 수당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지급신청) ①-----

-- 제2호서식(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별지 제5호서식)-
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